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 (남인순의원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134
----------	-------

발의연월일 : 2025. 6. 27.

발 의 자 : 남인순 · 김예지 · 박희승
김남희 · 손명수 · 김선교
송석준 · 박덕흠 · 김소희
박준태 · 최수진 · 서천호
김남근 · 박홍근 · 김미애
박주민 · 이수진 · 모경중
이재정 · 김현정 · 정성국
고동진 의원(22인)

제안이유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 평생 유병률은 약 25%로, 국민 4명 중 1명이 일생에 한 번 이상 정신 질환을 경험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민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되고 있으며, 기후위기와 각종 트라우마 경험이 누적되며 국민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나날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자살 등 중대한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 차원에서, 일반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비의료적 개입인 심리 및 상담서비스의 역할이 강조됨. 또한 비의료적 개입인 심리 및 상담서비스의 활성화로 의료-비의료-복지 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정신건강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국민 정

신건강을 증진할 것으로 판단됨.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심리 및 상담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과 관련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검증되지 않은 민간 자격증이 난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반면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심리 및 상담서비스 담당 주요 인력으로 심리사와 상담사를 운용하고 있으며, 영미를 비롯하여 EU 주요국가에서는 국민을 위한 심리 및 상담서비스를 활성화 함으로써 전 국민의 행복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등 국가에서는 심리사와 상담사를 별도의 자격으로 운영하여 각각의 고유한 지위를 보장하고 심리 및 상담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함. 이처럼 심리사와 상담사의 역할이 구분되며 그 교육 및 수련 과정이 상이하므로, 본 법안에서도 마음건강상담사와 마음건강심리사를 구분하여 하나의 법안에 포함함.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심리사 및 상담사 자격을 신설해 그 업무와 심리서비스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심리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의 자격을 관리 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접근과 지원체계를 강화해 국민의 행복수준과 마음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의 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의 시험관리, 교육인증관리, 실무수련인증관리 등의 업무를 하도록 자격관리원을 둠(안 제4조).
- 다.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의 자격을 각각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라.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 실무수련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관리원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8조).
- 마.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마음건강심리·상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둠(안 제9조).
- 바.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가 업무를 개시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12조).
- 사. 1급 마음건강심리사 및 1급 마음건강상담사에게만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아. 품위유지 및 성실의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보안조치 의무 등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 자. 전문성 및 품위유지, 권익증진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한국마음건강심리·상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의 자격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및 행복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음건강심리사”란 이 법에 따른 마음건강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2. “마음건강상담사”란 이 법에 따른 마음건강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심리서비스”란 심리학 관련 지식과 원리에 근거하여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리학적 개입을 포함한 행위를 말한다.
4. “심리평가”란 개인의 지능, 인지기능, 정서, 행동, 성격, 태도, 적응수준, 그 밖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표준화된 심리검사와 함께 면담과 행동관찰 등을 활용하여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관해 심리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가설을 수립하고 이를 분석하고 검증하여 보고서 서식으로 작성하는 절차적 행위를 말한다.

5. “심리교육”이란 심리학 관련 지식과 원리에 관한 정확한 사실 및 개념을 교육하여 심리적 현상이나 문제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마음건강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6. “심리자문”이란 심리서비스 또는 상담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자문에 응하여 심리학적 지식과 원리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상담서비스”란 상담학 관련 지식과 원리에 근거하여 마음건강 증진 및 생활적응을 위한 상담학적 개입을 포함한 행위를 말한다.
8. “상담 관련 검사 활용”이란 내담자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적절한 상담 관련 검사 도구를 선정하여 실시, 사정(appraisal)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기록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상담교육”이란 상담학 지식과 원리에 관한 정확한 사실 및 개념을 교육하여 상담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마음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증진하는데 필요한 행위를 말한다.
10. “상담자문”이란 상담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자문에 응하여 상담학적 지식과 원리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효과적인 상담 성과 달성 또는 상담 시스템 구축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전문적 행위를 말한다.

제3조(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의 업무) ① 마음건강심리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심리서비스

2. 심리평가

3. 심리교육

4. 심리자문

5. 제2항의 업무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마음건강심리사 1급 및 2급의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마음건강상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담서비스

2. 상담 관련 검사 활용

3. 상담교육

4. 상담자문

5. 제4항의 업무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마음건강상담사 1급 및 2급의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마음건강심리사가 아니면 마음건강심리사 명칭을 표방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할 수 없고, 마음건강상담사가 아니면 마음건강상담사 명칭을 표방하여 제3항에 따른 업무를 할 수 없다.

제4조(자격관리원) ①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 자격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하는 한국마음건

강심리·상담사자격관리원(이하 “자격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자격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시험관리
2. 교육인증관리
3. 실무수련인증관리
4. 보수교육

③ 자격관리원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의 자격 등

제6조(마음건강심리사 자격 등) ① 제2항에 따른 마음건강심리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1급 마음건강심리사의 자격을 갖고, 제3항에 따른 마음건강심리사 2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2급 마음건강심리사의 자격을 갖는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마음건강심리사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리학

관련 과목을 이수하여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3천 시간 이상의 실무수련을 완료한 사람. 이 경우 대학원 과정의 수련시간은 석사의 경우 최대 1천시간, 박사의 경우 최대 2천 시간까지 인정할 수 있다.

2. 2급 마음건강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마음건강심리사 업무에 종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련을 이수한 사람

3. 제1호에 상응하는 자격을 지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마음건강심리사 2급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리학 관련 과목을 이수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천 시간 이상의 실무수련을 완료한 사람. 이 경우 석사학위 과정의 수련시간은 최대 1천 시간까지 인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 상응하는 자격을 지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마음건강심리사 1급 및 2급 국가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마음건강심리사 1급 및 2급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마음건강심리사 1급 및 2급 국가시험의 과목·방법 및

실무수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마음건강상담사 자격 등) ① 제2항에 따른 마음건강상담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1급 마음건강상담사의 자격을 갖고, 제3항에 따른 마음건강상담사 2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2급 마음건강상담사의 자격을 갖는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마음건강상담사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학 관련 과목을 이수하여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3천 시간 이상의 실무수련을 완료한 사람. 이 경우 대학원 과정의 수련 시간은 석사의 경우 최대 1천시간, 박사의 경우 최대 2천시간까지 인정할 수 있다.
2. 2급 마음건강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마음건강상담사 업무에 종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련을 이수한 사람
3. 제1호에 상응하는 자격을 지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마음건강상담사 2급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학 관련 과목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2천 시간 이상의 실무수련을 완료한 사람. 이 경우 대학 과정의 수련시간은 최대 1천

시간까지 인정할 수 있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학 관련 과목을 이수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천 시간 이상의 실무수련을 완료한 사람. 이 경우 대학원 과정의 수련시간은 최대 1천 시간까지 인정할 수 있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상응하는 자격을 지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마음건강상담사 1급 및 2급 국가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마음건강상담사 1급 및 2급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마음건강상담사 1급 및 2급 국가시험의 과목·방법 및 실무수련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실무수련) ① 마음건강심리사 또는 마음건강상담사 실무수련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관리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마음건강심리사 또는 마음건강상담사 실무수련을 받는 자는 제 1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실무수련 기간 동안 마음건강심리사 또는 마음건강상담사의 책무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실무수련과정, 실무수련기관 및 실무수련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마음건강심리·상담사자격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마음건강심리·상담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마음건강심리 및 마음건강상담사 자격과 관련한 사항
2. 마음건강심리 및 마음건강상담사 징계와 관련한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마음건강심리사나 마음건강상담사가 될 수 없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2.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5.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마음건강심리사 또는 마음건강상담사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1조(자격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마음건강심리사 또는 마음

건강상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받은 경우
3. 제2항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마음건강심리사 또는 마음건강상담사의 업무를 하는 경우
4. 제2항에 따라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마음건강심리사 또는 마음건강상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자격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한 경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의 등록 등

제12조(등록 등) ①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가 제3조에 따

른 업무를 개시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한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과 제19조에 따른 한국마음건강심리·상담사협회에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법인의 설립 등) ① 1급 마음건강심리사 또는 1급 마음건강상담사는 제3조의 업무를 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을 개설 또는 해산하거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장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의 의무

제14조(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 마음건강심리사와 마음건강상담사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 엄수의 의무) 마음건강심리사와 마음건강상담사, 마음건강심리사와 마음건강상담사였던 사람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

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보안조치 의무) 마음건강심리사와 마음건강상담사는 심리서비스 및 상담서비스의 적절한 사용을 보장하고 오용 및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명의대여 등 금지) 마음건강심리사와 마음건강상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제3조에 따른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보수교육) ① 제3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는 업무능력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 업무를 자격관리원, 제19조에 따른 한국마음건강심리·상담사협회, 마음건강심리·상담사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기, 대상, 비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한국마음건강심리·상담사협회

제19조(한국마음건강심리·상담사협회) ①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는 전문성 및 품위유지, 권익증진 및 자질향상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마음건강심리·상담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에 관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 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0조(협회의 가입의무) 제1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는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1조(윤리규정) ① 협회는 그 회원인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가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시에 준수하여야 하는 직업윤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회원인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는 협회가 제1항에 따라 제정한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징계) 협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마음건강심리사 또는 마음건강상담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마음건강심리사 또는 마음건강상담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등 회칙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3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그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감독) 협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제6장 벌칙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5항을 위반하여 마음건강심리사 또는 마음건강상담사 명칭을 표방하여 마음건강심리사 또는 마음건강상담사의 업무를 한 자
2. 제17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자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6조를 위반하여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음건강심리사 자격 취득에 관한 특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마음건강심리사에 관하여 이 법에 준하는 마음건강심리사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심사를 거쳐 그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제3조(마음건강상담사 자격 취득에 관한 특례) 제7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하여 이 법에 준하는 마음건강상담사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심사를 거쳐 그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